

창원 의회 소식

제10호

해양솔라파크 일출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창원시 의회소식 제10호



Contents

04 의장 인터뷰

06 통합 창원시 제1대 의회 주요활동

08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32회 임시회(2013. 10. 8. ~ 10. 15.)
- 제33회 정례회(2013. 11. 25. ~ 12. 18.)

19 예산심의 활동

24 시정에 대한 질문

27 5분 자유발언

- 제32회 임시회(강장순 의원 등 9명)
- 제33회 정례회(차형보 의원 등 16명)

32 건의안 및 결의안

-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 촉구 결의안
- 북한 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
- 창원시 마산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
-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 쌀 목표 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
- 도로명 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
-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

41 위원회 활동

44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48 언론 보도자료

56 의원 칼럼





인터뷰 >> 배종천 의장



●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화합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 배종천 의장에게 지난 3년 6개월간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제1대 의회 의정 성과는?

의원들의 왕성한 입법 활동이다. 통합 창원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총 33회 335일 동안 회기를 열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창원·마산·진해 3개시의 통합으로 전국의 이목이 집중됐던 만큼 지난 3년 6개월간 의장단을 중심으로 지역간 갈등상황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의정 연찬회와 국회 위탁연수를 시행, 생산적인 의정역량을 다졌으며 국제 교류를 통해 대외 우호협력 증진에도 앞장서왔으며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55명의 시의원 모두가 극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통합 창원시의회를 기틀을 마련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그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는데 집중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110만 시민의 화합과 상생을 통해 창원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생활 개선에 주력할 것이며 항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남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성과와 활동계획은?

경남지역의 발전방향 협의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시·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매진해 왔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통합 창원시가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도 선진 모델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의 열쇠는 시민의 참여에 있듯이 시의회도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통합 창원시 제1대 의회’

활발한 입법활동, 통합 창원시의회 기반 다졌다.



2010년 7월1일 출범 후 3년 6개월간 총 33회 임시회 · 정례회 통해 조례 등 970건 처리 현장활동 중심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와

제1대 통합 창원시의회가 지난 18일 제33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정 활동을 마감했다. 2010년 7월1일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개원한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창원 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동안 시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책임 · 의무 성실히 수행

2010년 7월1일 개원 이후 12월 현재 총 33회의 임시회 및 정례회를 열어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970건의 안건을 심사 · 처리하고 102건의 진정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제23회 임시회부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안정적 · 체계적 지원과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제’를 전격 시행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94건 △입법 지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입법정보지 발간 등을 통해 입법 활동에 싹 틔우기 전념해왔다.

정책의회 초석 다져

활발한 입법활동 외에도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시정견제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3회 1,031건을 지적 · 처리 요구하고 5분 자유발언 60회(287건), 시정질문 19회(206건), 서면질문 1,160건, 서류제출 요구 137건에 걸쳐 각각 시정에 대한 건의 및 대안을 제시했고 행정전반에 걸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

전문성 강화

전문적인 의정활동도 돋보였다. 각 분야별 전문가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해 조례 제·개정 및 각종 법률사항 70여건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회운영의 체계를 정립했다. 또 예산안 분석 및 심사기법 등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전문분야 명사를 초청, 의정 연찬회를 연 중수시로 가졌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복지시설연구회 △좋은조례연구회 △도시계획연구회 △복지시책개선연구회 △농촌정책 연구회 등 5개 연구단체에서 38명의 의원이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그 결과 시정 발전을 위한 6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대외 위상 제고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한국지방의회 개원 60주년을 기념해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9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강장순 의원 등 20명이 발의·제정한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가 기초지방의회로는 단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이상인 의원과 전수명 의원은 ‘2010 매니페스토(지방선거부문)약속대상’ 지방의원 부문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과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강기일 의원은 2013년 ‘제7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박해영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선정한 ‘제3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되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총 123회에 걸쳐 주요현안 사업장 및 재해 피해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또 해마다 추석과 설 명절이면 어려운 시설과 군부대를 방문(6회)해 위문품을 전달했으며 농번기 농촌 일손 돕기 및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도시락을 전달하며 고통을 함께 나눴다. 의원들이 기증한 넥타이로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도 열어 판매 수익금 150만원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했다.

향후 계획

시의회는 그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대화합을 위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고자 경제 활력 증대와 일자리 창출, 친서민 복지정책 강화와 창조적 문화산업 육성, 자연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협력과 조정,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정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내적으로는 각종 연구모임을 통해 전문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정책의회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각종 연찬회 및 의정연수, 연구회 활동지원,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의정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10. 8. ~ 10. 15.) -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부지조성사업 준공으로 조성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사용하던 구(舊)법정동 명칭과 지번을 지역여건에 맞게 변경하여 소유자 재산권 보호 및 주민편의 도모

▣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 도입 당시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자립형 누비자 운영을 위한 위탁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노후된 수도 시설 개량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83.47%로 생산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낮아 상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함.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교육부 및 안전행정부의 교육제증명 4종에 대한 무인민원 발급기 무료발급 추가 통보에 따라 현행 검정고시 제증명 수수료 200원을 무료로 정비하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마시설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정비함.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교육부 및 안전행정부의 교육제증명 4종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무료발급 추가 통보에 따라 현행 검정고시 제증명 수수료 200원을 무료로 정비하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마시설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시 수수료를 징수토록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해당 수수료를 정비함.

■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청소년의 체험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등 청소년 수련활동을 수행할 종합적인 활동 공간인 진해청소년전당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연안오염 총량관리 및 해양 정화를 위한 공공수역의 방류수 기준 강화로 하수처리 및 시설유지관리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8.54%로 하수처리 원가 대비 사용료가 너무 낮아 사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 제 출 자 : 환경문화위원장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 ▶ 창원 임항선은 1923년 개통되어 마산항 제1부두선 또는 마산 임항선이라 불리어져 왔으며, 경전선인 마산역에서 마산항역을 잇는 총연장 8.6km로 구 마산의 도심지 중심을 관통하여 여객 및 화물운송 전용선으로 운행되어 왔으나,
- ▶ 1970년대 중반이후 교통 발달로 그 기능이 쇠퇴하여 화물전용 철도노선으로 전환되었으나 활용도가 낮아 기능을 상실해 2011년 폐선되면서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
- ▶ 따라서 폐선부지의 활용촉진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함.

»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10. 8. ~ 10. 15.) –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 2010년 12월 KTX의 개통으로 덕산역~진영역간 기존 철도는 폐선되고 동읍지역 내 군용 철도만 남아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시설(호송2중대, 조차장)의 이전 및 종합정비장 인입철도를 개량하여 기부하고, 국방부재산을 양여 받기 위하여 우리시와 국방시설 본부간에 체결하는「덕산조차장 및 호송2중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으로서,
 - ▶ 2011년 11월 21일 국방부로부터 군사시설 이전 승인을 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업추진과 상호협력을 통하여 군사시설 이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 규정에 의거 합의각서(안)을 의결(동의)받고자 함.

▣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조건부 찬성의견
- 제안이유
 - ▶ 토지이용, 주택,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조정·조율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고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공간계획이며 또한 우리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 ▶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함.

▣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 ▶ 창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창원시 전지역에 대하여 지형, 지리적 여건, 과거 풍수해 특성 및 피해원인분석,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 풍수해로부터 창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 본 계획에 대하여 소방 방재청 승인신청 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원시의회 의결을 듣고자 하는 것임.

▣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 제안이유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에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개발용량에 적합한 적정 도시기반시설 공급 등으로 건전한 도시발전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추진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차형보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인간이 누려야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북한주민들은 권리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관리법을 만들어 북한당국에게 이를 준수하라고 요청해야 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부서 등 관련기관에서 적극 나서서 같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조준택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 ▶ 창원시가 3차례의 용역을 거쳐 결정한 새야구장 입지를 2013년 9월 24일 KBO와 NC에서 새야구장 입지를 재론하는 것은 창원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임.
- ▶ KBO와 NC는 마산구장 리모델링 및 신규야구장 건립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프로야구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창원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부정적 여론조성으로 지역 간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 새야구장 건립이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 무엇보다 입지선정과 관련, 특정지역은 안 된다는 주장은 소모전에 불과하므로 창원시, KBO, NC는 대화와 협력으로 야구장 건립에 협조하여야 할 것임

제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11. 25. ~ 12. 18.) -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정쌍학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 ▶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 유포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이며,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일본 정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하며, 일본 정부 스스로 즉시 관련 동영상 유포를 삭제하고 더 이상 부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촉구함.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사업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함으로써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함.

■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창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3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받고자 함.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미비하여 기금지원 사업결정, 수혜자 선정 등을 심의할 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유통산업발전법」일부 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 공익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자활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근로 빈곤층의 자활 경로 지원을 위해 재원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및 지원 등 자활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제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11. 25. ~ 12. 18.) -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한 통합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운영하여 오던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와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 제정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이옥선 · 이성섭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주거지역과 접한 상업지역내 숙박시설의 건축으로 주거 및 교육 환경이 침해당하고 있어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통합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전 지역에 대하여 50m로 변경하고자 함

▣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점용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정,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11. 9. 16) 시행 (2012. 3. 17)됨에 따라 시 · 구청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지적재조사지원단과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 ▶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나,
 - ▶ 상위법인「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도로 무단점용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나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 규정한 내용대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실효성이 없는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창원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찬성의견 채택
- 제안이유

창원시 성산구 창곡동 86번지 일원에 부족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국토개발 및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지역 및 국토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결정(변경)을 추진 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이옥선 · 김동수 · 김성일 · 노창섭 · 방종근 · 이상인 · 차형보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 ▶ 수입산 수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 물질 함유 검사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피폭의 가장 큰 피해자가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학교 급식의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덜고, 안전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제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11. 25. ~ 12. 18.) -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강용범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 ▶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정부의 농업통상정책은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여 왔으며, 물가 상승 및 영농자재 값 급등으로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하여 소득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
 - ▶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자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식량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기초 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이 시급함.

■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차형보·김동수·김성일·노창섭
방종근·이상인·이옥선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생산 우수 농·축·수산물 및 식재료의 우선 사용과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 출장지역에 따라 숙박비를 구분하여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숙박비 지급단가를 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대상 및 한도액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효율적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해 사업소 소관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맞게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효율적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해 사업소 소관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효율적인 행정업무 운영을 위해 사업소 소관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사무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및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 체결 동의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08. 12월 舊마산시와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한 중국 강소성 남통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보다 차원 높은 상호협력 도모 및 우호증진을 위해「창원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 발 의 자 : 조갑련 · 조재영 · 이명근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창원시와 창원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제33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3. 11. 25. ~ 12. 18.) - 24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종결
- 제안이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임.

▣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

- 발 의 자 : 심재양 · 강장순 · 유원석 · 이상석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기업 · 근로자가 현실을 깊이 고민하고 소통하여, 기계산업 클러스터 및 기계산업에 특화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구비된 현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고, 미래 선도산업 중심으로 장기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10만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기플랜이 있는 최적의 국가산단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

▣ 도로명주소 읍 · 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

- 발 의 자 : 김동수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읍 · 면지역 주민들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가 없어지면서 심리적인 상실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마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읍 · 면지역 주민의 불만과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서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도로명주소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함.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

- 발 의 자 : 조갑련 · 이명근 · 이형조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 ▶ 보육료와 양육수당 운영시스템의 이원화로 중복지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지급시 불합리한 환수절차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피해를 받음.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일 12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보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육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개요

- 일 시 : 2013. 11. 25.(제3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위 원 수 : 11명
- 안 건 명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위원명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이상석	전수명	차형보, 김태웅, 이희철, 이찬호, 조갑련, 정광식, 여월태, 박철하, 김종식

위원회 활동 내역

- 제1차 회의(2013. 11. 25) :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제2차 회의(2013. 12. 5 ~ 12. 6)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 제3차 회의(2013. 12. 17)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결과

-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위원장 이상석



부위원장 전수명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비 고
			금 액	증감율	
계	2,409,769,899	2,354,912,196	54,857,703	2.33%	
일반회계	1,809,296,171	1,784,055,120	25,241,051	1.41%	
특별회계	600,473,728	570,857,076	29,616,652	5.19%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 년 도 예 산 액	구성비	비 고 증 감	
					증감률	
총 계	2,409,769,899	100%	2,354,912,196	100%	54,857,703	2.33%
일반회계	1,809,296,171	75.08%	1,784,055,120	75.76%	25,241,051	1.41%
특별회계	600,473,728	24.92%	570,857,076	24.24%	29,616,652	5.19%
공기업특별회계	215,961,179	8.96%	200,092,934	8.50%	15,868,245	7.93%
상수도사업	82,080,215	3.41%	86,662,499	3.68%	△4,582,284	△5.29%
하수도사업	72,729,117	3.02%	59,150,278	2.51%	13,578,839	22.96%
주택건설사업	12,988,490	0.54%	14,541,619	0.62%	△1,553,129	△10.68%
공영개발사업	5,713,357	0.24%	4,738,538	0.20%	974,819	20.57%
지역개발기금	42,450,000	1.76%	35,000,000	1.49%	7,450,000	21.29%
기타특별회계	384,512,549	15.96%	370,764,142	15.74%	13,748,407	3.71%
경륜운영	82,962,424	3.44%	89,136,663	3.79%	△6,174,239	△6.93%
기타경륜	31,067,845	1.29%	31,171,965	1.32%	△104,120	△0.33%
중소기업육성기금	14,935,913	0.62%	15,164,502	0.64%	△228,589	△1.51%
의료급여기금	8,156,081	0.34%	8,002,285	0.34%	153,796	1.9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4,131,200	0.17%	4,531,200	0.19%	△400,000	△8.83%
상생발전	14,714,000	0.61%	14,664,000	0.62%	50,000	0.34%
창원도시개발사업	70,053,756	2.91%	68,884,864	2.93%	1,168,892	1.70%
마산도시개발사업	47,683	0.00%	39,565	0.00%	8,118	20.52%
창원기반시설	55,772	0.00%	4,054,307	0.17%	△3,998,535	△98.62%
마산기반시설	95,462	0.00%	294,311	0.01%	△198,849	△67.56%
진해기반시설	4,855	0.00%	104,118	0.00%	△99,263	△95.34%
주차장운영	3,652,000	0.15%	3,460,109	0.15%	191,891	5.55%
교통사업	14,865,723	0.62%	15,105,183	0.64%	△239,460	△1.59%
해양신도시건설사업	40,000,000	1.66%	1,835,000	0.08%	38,165,000	2079.84%
농어민후계융자지원	123,888	0.01%	123,888	0.01%	0	0.00%
수질개선	1,897,144	0.08%	1,535,824	0.07%	361,320	23.53%
지하수관리	986,525	0.04%	0	0.00%	986,525	순증
창원토지구획정리사업	15,117,451	0.63%	18,428,449	0.78%	△3,310,998	△17.97%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14,700,000	0.61%	12,500,000	0.53%	2,200,000	17.60%
신방지구도시개발	1,030,000	0.04%	0	0.00%	1,030,000	순증
감계지구도시개발	33,282,993	1.38%	42,331,511	1.80%	△9,048,518	△21.38%
동전지구도시개발	13,249,575	0.55%	3,659,150	0.16%	9,590,425	262.09%
무동지구도시개발	18,332,642	0.76%	33,758,628	1.43%	△15,425,986	△45.69%
낙동강살리기사업 골재수익금운영관리	1,049,617	0.04%	1,300,000	0.06%	△250,383	△19.26%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 년 도 예 산 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409,769,899	100 %	2,354,912,196	100 %	54,857,703	2.33%
지방세수입	613,724,000	25.47 %	593,724,000	25.21 %	20,000,000	3.37%
세외수입	503,301,183	20.89 %	485,851,364	20.63 %	17,449,819	3.59%
경상적세외수입	464,384,117	19.27 %	457,443,828	19.43 %	6,940,289	1.52%
임시적세외수입	38,917,066	1.61 %	28,407,536	1.21 %	10,509,530	37.00%
지방교부세	245,759,155	10.20 %	281,300,000	11.95 %	△35,540,845	△12.63%
재정보전금	175,430,000	7.28 %	193,341,000	8.21 %	△17,911,000	△9.26%
보조금	614,878,197	25.52 %	552,324,611	23.45 %	62,553,586	11.33%
지방채	30,000,000	1.24 %	30,000,000	1.27 %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26,677,364	9.41 %	218,371,221	9.27 %	8,306,143	3.80%
보전수입등	121,816,566	5.06 %	134,189,486	5.70 %	△12,372,920	△9.22%
내부거래	104,860,798	4.35 %	84,181,735	3.57 %	20,679,063	24.56%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 년 도 예 산 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409,769,899	100 %	2,354,912,196	100 %	54,857,703	2.33 %
일반공공행정	138,977,422	5.77 %	126,440,261	5.37 %	12,537,161	9.92 %
공공질서및안전	33,720,125	1.40 %	22,278,075	0.95 %	11,442,050	51.36 %
교육	47,590,235	1.97 %	39,660,199	1.68 %	7,930,036	19.99 %
문화및관광	248,615,556	10.32 %	254,370,980	10.80 %	△5,755,424	△2.26 %
환경보호	252,948,290	10.50 %	277,551,088	11.79 %	△24,602,798	△8.86 %
사회복지	617,799,622	25.64 %	533,512,760	22.66 %	84,286,862	15.80 %
보건	30,649,590	1.27 %	28,684,384	1.22 %	1,965,206	6.85 %
농림해양수산	93,790,614	3.89 %	95,567,083	4.06 %	△1,776,469	△1.86 %
산업·중소기업	62,137,632	2.58 %	73,291,400	3.11 %	△11,153,768	△15.22 %
수송및교통	216,811,944	9.00 %	240,193,781	10.20 %	△23,381,837	△9.73 %
국토및지역개발	274,817,260	11.40 %	285,014,132	12.10 %	△10,196,872	△3.58 %
예비비	20,508,356	0.85 %	20,310,658	0.86 %	197,698	0.97 %
기타	371,403,253	15.41 %	358,022,395	15.20 %	13,380,858	3.74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수	2013년도 말 조성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14개	103,693,663	29,679,382	46,090,718	87,282,327	△16,411,336

기금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수	2013년도 말 조성액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조성액	증 감
		수입	지출		
14개 기금	103,693,663	29,679,382	46,090,718	87,282,327	△16,411,336
지방채상환적립기금	46,814	959,248	957,900	48,162	1,348
투자유치진흥기금	9,073,953	254,070	6,539,000	2,789,023	△6,284,930
중소기업육성기금	31,581,500	979,026	13,431,026	19,129,500	△12,452,000
저소득자녀장학기금	2,292,995	2,500	132,000	2,163,495	△129,500
자활기금	3,164,444	269,779	160,000	3,274,223	109,779
여성발전기금	7,594,078	180,000	300,000	7,474,078	△120,000
노인복지기금	4,202,075	120,311	120,311	4,202,075	0
농업발전기금	12,634,191	1,190,000	266,960	13,557,231	923,040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10,347,908	872,657	9,632,080	1,588,485	△8,759,423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0	9,210,000	0	9,210,000	9,210,000
식품진흥기금	1,063,333	275,930	275,930	1,063,333	0
옥외광고정비기금	56,286	260,400	0	316,686	260,400
부대이전사업기금	100,000	8,954,480	8,954,480	100,000	0
재난관리기금	21,536,086	6,150,981	5,321,031	22,366,036	829,950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	2,597,650,776	2,502,384,950	95,265,826	3.81%
일반회계	1,984,209,261	1,922,224,184	61,985,077	3.22%
특별회계	613,441,515	580,160,766	33,280,749	5.74%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 년 도 예 산 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597,650,776	100 %	2,502,384,950	100 %	95,265,826	3.81%
지방세수입	622,380,000	23.96 %	622,380,000	24.87 %	0	0.00%
세외수입	750,220,031	28.88 %	729,200,162	29.14 %	21,019,869	2.88%
경상적세외수입	388,331,777	14.95 %	378,263,002	15.12 %	10,068,775	2.66%
임시적세외수입	361,888,254	13.93 %	350,937,160	14.02 %	10,951,094	3.12%
지방교부세	269,981,031	10.39 %	287,972,154	11.51 %	△17,991,123	△6.25%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195,341,000	7.52 %	193,341,000	7.73 %	2,000,000	1.03%
보조금	620,428,714	23.88 %	609,491,634	24.36 %	10,937,080	1.79%
국고보조금등	457,821,991	17.62 %	462,526,925	18.48 %	△4,704,934	△1.02%
시·도비보조금등	162,606,723	6.26 %	146,964,709	5.87 %	15,642,014	10.64%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39,300,000	5.36 %	60,000,000	2.40 %	79,300,000	132.17%
국내차입금	139,300,000	5.36 %	60,000,000	2.40 %	79,300,000	132.17%

세출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전 년 도 예 산 액	구성비	비교 증감	증감률
총 계	2,597,650,776	100 %	2,502,384,950	100 %	95,265,826	3.81 %
일반공공행정	139,215,447	5.36 %	131,606,136	5.26 %	7,609,311	5.78 %
공공질서및안전	25,029,608	0.96 %	21,461,111	0.86 %	3,568,497	16.63 %
교육	39,684,048	1.53 %	39,878,070	1.59 %	△194,022	△0.49 %
문화및관광	261,875,382	10.08 %	260,297,751	10.40 %	1,577,631	0.61 %
환경보호	296,788,638	11.43 %	305,684,794	12.22 %	△8,896,156	△2.91 %
사회복지	619,771,749	23.86 %	592,706,317	23.69 %	27,065,432	4.57 %
보건	28,310,065	1.09 %	28,723,189	1.15 %	△413,124	△1.44 %
농림해양수산	114,942,681	4.42 %	112,074,627	4.48 %	2,868,054	2.56 %
산업·중소기업	107,233,142	4.13 %	81,970,965	3.28 %	25,262,177	30.82 %
수송및교통	269,157,362	10.36 %	270,259,411	10.80 %	△1,102,049	△0.41 %
국토및지역개발	337,096,658	12.98 %	287,408,710	11.49 %	49,687,948	17.29 %
예비비	5,570,235	0.21 %	9,929,991	0.40 %	△4,359,756	△43.90 %
기타	352,975,761	13.59 %	360,383,878	14.40 %	△7,408,117	△2.06 %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 10. 11(금)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 순 호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온압보정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질문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곳의 정상 작동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또 현재 진해군항제와 진해군악의장페스티벌은 통합 창원시이후에도 지명을 계속 쓰고 있는데 반해 가고파 국화축제만 마산이라는 지명이 빠졌는데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꿀 수 없는지?

답변 온압보정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다. 가고파 국화축제에 대한 명칭 변경은 축제위원회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하겠다.



노 창 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질문 선진국이나 전국적 흐름으로 볼 때 로컬푸드 사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창원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로컬푸드 사업과 학교 및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추진하고 학교 및 공공급식센터 추진도 노력하겠다.



박 철 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질문 통합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세수가 감소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창원시는 재정위기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전반적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당면 현안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다.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 12. 10(화) 10:00~)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시정 질문/답변)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태 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음식물쓰레기 용기침출수 오염 막아야

질문 2013년 6월이후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가 전면 사용된 후 음식물 잔여 침출수와 용기 세척수가 우수관으로 유입돼 주택가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하천과 바다오염으로 이어져 한여름 갈따구떼가 창궐하고 있다.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은?

답변 실태조사를 통해 우수관으로 유입되게 세척하는 곳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오수관리가 설치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 명 군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상표등록 의향은

질문 마산가고파국화축제의 목적은 마산국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국화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화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증액과 국화축제를 상표등록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향후 마산항 연안크루즈(관광유람선)와 연계해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명칭에 대한 상표등록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김 동 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시청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효과는

질문 청사 분할은 우리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다. 청사의 사무공간 재배치 계획이 통합의 정신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사무공간 재배치로 행정비용이 절감되며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있는 도시로서 성장 등의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아직 검토중인 대안의 하나지만 창원시 미래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며 시민 화합을 위한 가치실현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김 석 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에 대해

질문 지난 8월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의창구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했던 직원에 대해 차별 시정 신청을 인정하는 판정이 있는 후 시정 조치 진행과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향후 전환 계획은?

답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시정조치했다.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전환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문 순 규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창원산단 지정 40주년 기념행사 관련

질문 창원산단 지정 40주년 기념행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개최 예정으로 선거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논란은 창원산단 4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도 어려운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행사를 준비해왔고 선관위도 정상적으로 승인한 행사인 만큼 선거와 관련한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박 삼 동 의원
(환경문화위원회)

자족형 행정복합타운 추진 여부

질문 자족형 행정복합타운의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창원시가 개발계획을 포기하는 것은 향후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많다.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없이 중앙의 감사까지 받았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답변 감사원 감사는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장에 대해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이며,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에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가 먼저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음식물쓰레기 용기침출수 오염 막아야

질문 최근 노키아티엠씨의 구조 조정으로 마산수출자유지역 내 고용 여건이 더욱 열악해졌다. 그럼에도 국비와 도비 등을 투입하여 고도화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이에 따른 추진 현황은?

답변 1단계 구조고도화사업에 이어 2단계 구조고도화사업이 2016년까지 모두 완료되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수출 실적도 증가할 전망이다.



5분 자유발언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 순 의원

창원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촉구하며.
(2013. 10. 8.)

110만의 인구와 5만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에는 아직도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데 인구가 작은 42개 시·군·구에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생활체육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강력히 촉구함.



이 명 군 의원

신규 야구장 부지선정
용역의 난맥상과 관련하여
(2013. 10. 8.)

각종 대형 사업들의 입지나 수요 예측에 있어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에 근거해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 입지를 선정하게 됨에 따라 용역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음. 행정절차상의 정당성을 부여 받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용역들이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게 해 줄 것을 촉구함.



송 순 호 의원

수정일반산업단지
환매 서둘러야
(2013. 10. 8.)

2011년 11월 STX 중공업이 수정산업단지 조성을 포기함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인가가 당해 12월에 취소되었고, 규정에 따라 2012년 3월에 창원시는 STX중공업에 환매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 수정만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환매절차가 차질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며 공공부지 매각 대금 24억원에 대한 환수에 최선을 다해야 함.



정 영 주 의원

빛나는 땅 창원에 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설립
되기를 바라며(2013. 10. 15.)

여성이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로, 소수자로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음.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 및 직업재활 창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창원지역에 반드시 설립되기를 촉구함.



전 수 명 의원

진해루 야외공연 기본무대
설치해야 한다.
(2013. 10. 15.)

진해루는 하루 이용객만 3,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운동과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로 넘쳐나고 사계절 내내 공연과 음악회가 열리면서 문화 일번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음. 진주 남강에 설치된 야외무대처럼 외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 무대를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함.



김 성 준 의원

신규 야구장과 창원시의회
(2013. 10. 15.)

신규 야구장 건립과 관련한 KBO와 NC의 입장, 그리고 창원 입장, 시의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되짚어 보고자 함. 애초 KBO와 NC는 2만 5천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새 야구장을 전문가 등의 이견에 따라 건립해 줄 것을 주장했으나 창원시가 진해구 육군대학 터를 새 야구장 터로 확정하자 서로 갈등을 빚고 있음. 이제 창원시의회는 조정자 역할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함.

5분 자유발언



정 쌍 학 의원

가고파국화축제에 반드시
마산지명을 넣을 것을
촉구하며(2013. 10. 15.)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통합이후 '가고파국화축제'로 명칭이 바뀌어 버렸음. 또한 만날제도 계사년 만날제로 바뀌는 등 축제 명칭에서 부터 마산이라는 지명이 지워지고 있음. 지금부터라도 마산이라는 지명을 넣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홍보해 화합된 분위기에서 최고의 명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손 태 화 의원

2014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주소 사용과
관련하여(2013.10.15.)

창원시에서 2011년~2013년도에 책자형 안내도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하였지만 현실 생활에 접목하지 못하여 내년부터 혼란이 예상되는 바,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전면 실시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실제 도로명주소를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 갑 련 의원

한글반포 567주년,
국어기본법에 충실한가?
(2013. 10. 15.)

2005년 국어기본법이 제정되고 각 지자체에는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으나 과중한 업무 탓에 국어책임관의 역할은 미미함. 그 어떤 사업보다도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시는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한글의 우수성을 일깨우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공문서의 외래어 오·남용을 없애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노력을 창원시 차원에서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함.





제3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의정활동(5분 자유발언)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형 보 의원

창원시 동읍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복지 수혜율 증진 대책 강구 요망(2013. 11. 25.)

동읍은 주남저수지, 다호리 고분군, 군부대, 철도시설 등이 산재돼 있고 개발행위 제한으로 어떠한 발전 계획도, 변화도 없음. 동읍지역이 창원시 인접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며 미래지향적 부도심으로 거듭나려면 지역 환경에 맞는 대안과 정책 추진이 필요함. 창원시는 육군종합정비창 부근 ~ 동읍 무성리 간 폐선부지에 대해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해 미래지향적인 도시 면모를 갖출 수 있기를 당부함.



유 원 석 의원

진해구 태백삼거리~속천 해안도로간 도로 개설을 촉구하며(2013. 11. 25.)

진해구는 해안도로변을 정비해 진해루 주변에서 산책과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도심지 내에 군부대가 있어 잘 정비된 해안도로변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먼 길을 돌려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태백삼거리에서 속천 해안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고 있으므로 창원시가 적극적으로 군부대 관계자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착공될 수 있기를 촉구함.



조 준 택 의원

해군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제작 제안 (2013. 11. 25.)

1946년 초대 해군참모총장이자 해병대를 창설한 손원일 제독은 일본군가에 가사만 바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전군 최초의 군가 '바다로 가자'를 만들었음. 진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가를 모티브로 삼아서 해군과 해병대 소재로 창작 뮤지컬 제작을 제안함.



노 창 섭 의원

창원시는 성산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라! (2013. 11. 25.)

창원시 5개 구 중 4개 구에는 청소년 시설이나 문화의 집 등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최소한 한 곳 이상 있으나 창원시 전체 14만 7천명 초·중·고 학생중 성산구에만 3만 8천명으로 가장 많은 25.98%를 차지하면서도 청소년 관련 시설이 없음. 창원시내 청소년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산구 청소년들이 쉬면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촉구함.



박 철 하 의원

진해항을 친수공간으로 전환하여 시민의 품으로... (2013. 11. 25.)

지방관리항인 진해항은 그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으나 현재 항만주변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정부는 하루 속히 진해항을 지방관리 항에서 국가관리항으로 전환하고 도심 외곽에 계획하고 있는 신항으로 이전해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주길 바램.



최 미 니 의원

진보당은 위헌정당이 아닙니다. 해산청구는 부당합니다. (2013. 11. 25.)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 오면서 오직 풀뿌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발로 뛰며 일해 왔음.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버 재배농가 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조례 등 노동자, 서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음. 풀뿌리 지방자치를 지키는데 시민들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함.

5분 자유발언



강 용 범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 제도 개선 촉구
(2013. 12. 11.)**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과 농촌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이장이 신청서를 대신 접수할 수 있고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는 소작농은 부가세 10%를 내도록 한 것을 예전과 같이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직까지 신청 방법을 모르는 농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연말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함.



전 수 명 의원

**국가안보 만큼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2013. 12. 11.)**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과 유가족들을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해서는 안되며 국가안보는 전쟁의 수단이나 이념의 도구가 될 수 없음. 임진·정유 재란과 일제강점기, 6.25동란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국가안보의 결연한 의지로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할 것임.



김 성 일 의원

**해양공원 입장료.
이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13. 12. 11.)**

해양공원 음지교에 줄지어 선 차량과 인파들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원입장료, 시설 이용료와 주차료 등의 이중삼중 징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양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 갑 련 의원

**정부 3.0에 발맞추는 행정을
요구하며
(2013. 12. 11.)**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양육수당과 보육료가 이중지급된 청구서를 보내지 말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부모에게 직접 고지서를 보내서 직접 환급할 수 있도록 창원시에서 시정 요구를 해서 개선해야만 함



장 병 운 의원

**웅동지구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에 앞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지 매각 처분
절차부터 이행하라(2013. 12. 18.)**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지 매각처분절차를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사전 협의도 없이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경남도의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창원시의 계획대로 2014년 2월까지 매각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과 웅동지구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 그날까지 창원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박 철 하 의원

**신규 야구장 문제는 통합 창원시
1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
(2013. 12. 18.)**

NC가 시간을 끌어 2대째 시장이 바뀌면 신규 야구장 입지 변경에 관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착오이며 통합 창원시 근간을 뒤흔들게 되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야구장 문제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통합1대에 매듭짓고 통합 2대째 오직 창원시 발전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박 삼 동 의원

시정은 소통이 되어야 110만
시민이 살맛나고, 신바람 나는
명품도시 창원시가
이루어진다(2013. 12. 18.)

시정업무에 대해서는 듣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불통이며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공감대를 만들 수 없음. 소통을 이루어 내려면 최후의 정책 결정권자가 직접 나서야 하며 토론장에 나와서 직접 협의하면서 경청하고 역지사지로 공감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김 성 일 의원

진해구 풍호동 한림리츠빌
아파트 앞 사거리 좌회전 신
호와 횡단보도 설치 촉구
(2013. 12. 18.)

한림리츠빌아파트 앞 사거리는 진해동부와 서부지역을 잇는 중간 교량 역할을 하여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지역임.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장애인들 비롯한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들과 주민들,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강 영 희 의원

어린이공원 안전대책 수립과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2013. 12. 18.)

어린이 공원에 대해 안전대책을 시급히 수립해 줄 것과 창원시 어린이교통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을 제안하며 언제나 안전이 예산 부족으로 뒷전으로 밀리는데 창원시는 국제안전도시 승인에 발맞춰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노 창 섭 의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화를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2013. 12. 18.)

창원시와 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법적지위 마련과 사무권한, 재원배분, 행정 조직상의 특례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가 마련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내년 1월 임시회에는 반드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국회와 안전행정부 방문하는 등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함.



KBO와 NC의 새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행정간섭 중단촉구 결의안



지난 2011년 6월 28일 창원시의회회의 동의안 승인으로 110만 창원 시민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창원시 연고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가 KBO와 함께 야구장 입지 변경요구 등 과도한 행정 간섭을 하고 여론을 호도하며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이의 중단을 촉구하고자 창원시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창원시가 3차례의 용역 절차를 밟아 창원의 100년 미래 발전을 고려하여 결정한 야구장 입지를 KBO와 NC가 재론하는 것은 창원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다.
2. 지난 9월 24일 KBO가 발표한 야구장 입지 재조사 내용은 KBO의 입맛에 맞추어 오직 흥행성 위주로 짜깁기한 편협한 결과물로써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중단하길 바란다.
3. 창원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마산구장 리모델링 및 신규야구장 건립에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KBO와 NC는 창원시 행정을 신뢰하고, 안전행정부는 10월 24일 새야구장 건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통과시켜 야구장 건립에 적극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
4. 만약, 창원시민과 창원시의회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한 입지 변경요구 등의 부정적 여론 조성으로, 야구장 건립 사업이 지체되거나 중단될 시 그 책임은 KBO와 NC에 있음을 주지하기 바란다.
5. 끝으로 입지선정에 대하여 특정한 지역은 안 된다는 주장은 소모전에 불과하므로 창원시와 KBO, NC는 상호 원만하게 협의하여 신규야구장 건립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0. 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북한인권법 조기 제정 촉구 건의안



인간이 누려야 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인권이라고 한다면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정치적으로 이유로 더 이상 방치하기엔 너무나 가혹하며 이러한 참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을 만들어 북한이 이를 준수하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을 마련하여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 제정·공포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도 이미 법률을 제정하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북한주민의 생존문제 해결과 자결권 확보를 위해서 한시라도 법률제정이 시급하며 방치해 둘수록 북한주민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식량과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과 분배감시, 탈북자의 망명신청자격 제한 해지, 대북인권관련 민간단체 지원과 인권대사를 임명하여 북한당국과 인권대화 추진 등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 외교적 결례, 법적 효력유무, 북한압박용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외면하기엔 너무나 많은 북한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며 지속 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 등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아 많은 국민은 우려와 걱정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켜만 보고 있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전 세계를 향한 자주적 결단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이자 북한에 대한 복지법이고 글로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을 신장하는 중요한 법이라 판단되어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110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식량과 의약품 공급 등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라.
3.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시대적 소명이며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수단임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의제 채택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한다.

2013. 10. 15.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시 마산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



창원시 마산 임항선은 1923년 개통되어 경전선인 마산역에서 마산항역을 잇는 총연장 8.6km로 구 마산의 도심지 중심을 관통하여 여객 및 화물운송 전용선으로 운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교통 발달로 그 기능이 쇠퇴하여 화물전용 철도노선으로 전환 되었으나 그 역시 활용도가 낮아 기능을 상실해 2011년 폐선되면서 쓰레기투기와 악취,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우리시의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임항선을 도심속 녹색 숲길로 조성하자는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 2009년 임항선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2013년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철로변 경관개선 모범사례로 인정받으며 도심속 건강한 녹색공간으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폐선부지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이 불가 하여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시민들의 불만 또한 거세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마산 임항선이 반드시 무상사용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환원 되어야 함을 대내외에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창원시 마산 임항선은 일제 강점기에 사유지를 강탈하여 건설한 철도폐선부지로 마땅히 창원시민들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폐선부지의 활용촉진을 도모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폐선부지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가 될『국유재산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시민을 위한 국가정책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창원시 마산 임항선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13. 10. 15.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 삭제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방적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국제사회에 유포한 것은 한일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유포한 일본 정부를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 메이지 정부가 1873년 3월 태정관 지령을 통해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고 밝힌 문서를 일본 국민과 세계인에게 숨긴 채 동영상을 유포한 일본 정부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고, 일본의 자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일본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창원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는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유포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 창원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스스로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창원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며,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확고히 하는 대응책 마련을 주문한다.
4. 창원시의회는 독도를 일본이 자국의 영토로 왜곡하는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독도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임을 천명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수호 다짐을 결의한다.

2013. 11. 25.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학교 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진행형이다. 2011년 4월 비온 뒤의 제주산 상추와 통영산 시금치에서 방사성 요오드와 방사성 세슘이 소량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입한 수산물 1만 3천여 건 중 130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음이 보고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도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입된 사료 중 41건, 약 1천 800톤에서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양식 어류용 사료 702톤에서 킬로그램당 0.1~1.4 베크렐의 세슘, 뱀장어사료로 수입한 사료 1.2톤에서도 킬로그램당 0.2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으나, 전량 양식장 사료로 사용되었으며, 가축사료나 복합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단미사료 1만 85톤에서도 0.3~2.3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으나, 정부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40베크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량 시중 유통되었다.

사료에 포함된 방사능 물질은 어류나 가축에 축적되어, 음식물로 섭취할 경우 인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로 통계에 따르면, 음식을 통한 피폭이 80~90%로, 태아·여성·어린이에게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방사능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들을 그대로 유통시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방사성 세슘 기준 킬로그램당 370 베크렐, 일본산 식품에 대하여는 2012년 4월부터 100베크렐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산 식품 수입을 허용하였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원전사고 직후, '식품공전'의 1만초 검사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속검사법'을 도입, 1800초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1만초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방사능 물질 검출율이 20배나 높게 나타난 것으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밝혔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방사성 세슘 기준을 세계적 흐름에 맞추어 4베크렐로 줄이고, 소아의 경우에는 1베크렐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와 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학교급식 사용 제한을 위해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제공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창원시에서만 2천만 원대의 고가 방사능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을 뿐, 타 시·군 대부분이 채 100만 원도 안 되는 저가의 측정기를 이용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 또한 검사 의뢰된 식재료에 국한된 검사이므로 식재료 전체의 안전성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각각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 이전에 정부가 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방사능 함유 우려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정확한 방사능 오염 검사를 위해 각 시·군·구에 측정기 구입예산 2억 원을 지원한다.
2.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기준치를 세계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한다.
3. 방사능 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를 수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실시하여 근본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심각하게 안전성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물과 표고버섯 등은 학교 급식 사용에서 제외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2013. 12. 11.

창원시의회의 의원 일동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속되어온 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농업부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여 왔고,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정부의 농업통상정책은 국내 농업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의 연구나 준비 없이 추진되어 농업부분의 희생을 또다시 강요하여 농업인들의 생산의지를 더욱 하락시켰다.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자 우리나라 농업의 중심이다. 전체 경지면적의 60% 이상이 쌀농사를 짓고 농가소득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산업임에도, 우리나라 쌀 관련 정책은 지난 2004년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된 후 2005년부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도로 바뀌면서 목표가격이 도입되어 쌀 80kg당 170,083원으로 정해진 후 8년간 단 한 번도 상승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기존 가격에서 단 4,000원(2.4%) 인상한 174,083원으로 정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농업인의 분노를 일으켰다.

해마다 쌀 생산비와 물가는 상승되어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하락했으나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의 어떤 조치도 없었으며, 이는 쌀 재배면적을 축소시키고 쌀 생산량이 크게 감소되며 식량자급률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수입쌀을 제외하면 우리나라도 쌀 부족국가로 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자연재해 등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농산물 대란과 가격 폭등의 빈번한 발생은 농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고조시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하나이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은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식량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을 정부와 국회는 인식해야 하며 이를 통해 농민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에 창원시 의회는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담아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쌀 생산비 인상과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하라.
2. 국회는 식량주권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이번 목표가격 조정에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목표가격을 인상 조정하라.
3. 안정적인 식량공급체계와 농민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도입하라.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시민을 위한 국가정책의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110만 창원시민과 함께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3. 12. 1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도로명주소 읍·면지역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 건의안



국가시책으로 추진해 온 도로명주소사업이 지난 2011년 7월에 고시한 후 기존 주소와 병행해 오다 오는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전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벌써부터 일부 시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의 어려움과 마을 명칭 상실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지번주소를 사용해 온 읍·면지역의 주민들은 조상대대로 사용하던 마을이름인 법정리 및 자연마을 표기가 없어지고 도로명만 표기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상실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마저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소에서 “리”명칭과 마을이름이 없어지면서 다른 마을이 같은 도로명으로 표기되고 자신들이 모르는 지명이 주소로 사용되고 있는 등 도로명주소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동지역은 과거 “리”명칭을 법정동 명칭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에서도 기존 동 이름을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촌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보류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차별정책 시정하라.
2.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같이 법정리 및 자연마을 명칭을 도로명주소에 병기하도록 도로명주소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2013. 12. 1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창원국가산업단지 혁신단지 선정 촉구 건의안

창원국가산업단지는 1974년 4월 1일 정부의 중화학 기계공업의 육성 정책에 의거 창원종합기계공업 기지로 지정되어 약15Km의 창원대로를 기점으로 남측은 공업단지, 북측은 배후도시로 형성된 국내 최초 계획도시로 공업위주 국가산단으로 개발되어, 1970년대 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발전해 기계산업의 메카로 가공·조립 분야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력으로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계산업 집적지로서 양호한 산업 기반과 계획도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비약적인 산업단지 발전을 이루어 2013년 현재 기준으로 수출액이 239억불로 경남도 수출의 35%, 생산액 53조 원으로 도생산액의 64%를 차지 하는 등 고용 91,897명, 가동율 83.7%로 110만 통합창원시와 경남도 일자리의 핵심 단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산업인프라 노후화와 연구 개발 부족, 핵심 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대기업 중심의 기업활동과 산업용지 공급부족, 연구 및 기능인력 확보 어려움, 기술집약적 연구시설 부족, 양호한 근로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 내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기반 인프라 시설과 기계고 훈련원, 폴리텍대학, 창원공대 클러스터, 재료·전기연구원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 세계적 수준의 선도 대기업과 협력 관계인 중소기업 집적지로 양호한 연구개발 환경조성 및 우수한 혁신자원을 보유한 창원국가산단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하여, 미래 선도 산업 중심으로 장기발전 비전을 설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혁신 단지로 선정되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국가산단으로 거듭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11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창원시의회는 국가에서도 선도적 견지에서 혁신단지 최적지 국가산단임을 명실공히 공유해, 10만 일자리 창출로 도시 발전 원동력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창원국가산단 혁신단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창원국가산단은 110만 통합시민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전략사업 위주의 산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도시 발전을 위하여 혁신단지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 자율 통합시의 도시 미래를 선도하여야 한다.
2. 창원시는 정부가 주도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로, 그 중심에 창원국가산단이 있기에 명실상부한 창조경제 1호로서 혁신단지에 우선 선정되어 그 성과가 파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창원국가산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집적지로 산단의 필수 요건인 복지시설, 융합시설 등의 부지가 이미 조성·확보되어 있는 최적의 준비된 산단이므로 최우선 선정되어야 한다.
4. 창원국가산단은 우리나라 기계산업 총생산의 약 13.3%, 수출의 약 14.1%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국가혁신단지의 선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육성이 필수적이다.
5. 정부는 창원시와 의회가 친기업 정책 실현을 위하여 전국 최초 기업사랑 조례 제정, 기업사랑과 출범, 2011년 창원국가 공단의 발전 비전과 정책과제를 이미 발굴, 실현 중에 있으므로 창원국가산단이 혁신단지에 우선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013. 12. 1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안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는 정부 3.0 시대가 열렸다. 이와 발맞추어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출산율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 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져 가고 있어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과 함께 어린이집 미이용 영유아 보호자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이용시에는 아이사랑카드로 보호자가 직접 보육료를 결제하면 어린이집에서는 카드회사로부터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으나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급 시스템의 이원화로 인해 중복지급 사례가 잦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중복지급된 경우 실질적인 이중수령자인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어린이집에서 환수액을 부담해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이용한 일부 부도덕한 보호자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부당한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주 6일 이상, 1일 12시간을 운영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인력운영상, 재정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육교사 또한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권이 묵살되고

있는 것이다. 12시간의 근무시간 운영으로 파생되는 또다른 현실적인 문제점은 맞벌이 부모 증가에 따른 안정적 보육서비스 전달을 위한 시간연장 보육시간 운영에도 발생한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07시30분부터 19시30분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시간연장 보육시간은 19시30분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유치원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고 있어 유치원에 재원하는 영유아가 시간연장보육을 원할 경우 18시부터 19시30분까지의 시간적 공백현상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현실도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의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안정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시스템 일원화 등 사전 예방적 대책을 마련한다.
2. 중복지급 환수 시 실질적인 이중 수령자인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또는 초과되는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4. 시간연장 보육시간 개시시간 등 기타 현실과 맞지 않는 각종 제도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보육사업지침을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2013. 12. 18.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우서)는 지난 10월 14일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최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다.
- 11월 18일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 11월 25일 ~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정례회 기간 중 12월 4일, 12월 16일 양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5일 제1차 회의를 거쳐 환경문화위원회 소속 이상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총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2014년도 본예산 및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구밋읍 · 면 · 동 명칭과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24일간 개최된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등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창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도시 결연체결 동의 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수정가결 하였다.



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장병운)는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소관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중 소관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2월 9일 오전에는 창원소방본부를 방문하여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오후에는 마산합포구 창동·오동동일대를 방문하여 부림창작공예촌과 창동예술촌, 오동동 소리길 등 사업현장을 점검한 후 마산원도심 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제/복/지/위/원/회



-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창원시 진해청소년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가결하였으며 소관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 임시회 기간중인 10월 10일 현장활동의 일환으로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고객편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제33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환/경/문/화/위/원/회



-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는 제3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창원 임항선 폐선부지 무상사용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10.10(목)에는 마산해양드라마세트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설을 점검확인하고 관계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10.14(월)에는 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정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환경문화분야 정책제안과 상호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12월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창원시 국어 진흥 조례안 ▷환경문화위원회 소관부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그리고 12.3(화)에는 김달진 문학과 웅천도요지전시관을 현장방문하여 현황을 보고받고 체험프로그램을 점검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는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2013.11.25 ~ 12.18) 기간 중 ▷소관 국·소 및 구청별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25건, 42억 삭감의결 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및 추진단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도로 무단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도시 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을 원안가결 하고 ▷창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 했다.
-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인 11.29.(금) 오후 3시~ 5시까지 금강로(화성동 교도소~3.15국립묘지 입구)를 방문하여 주관부서인 도로건설과의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 등의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으로 보는



10월 8일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10월 14일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10월 21일 농촌정책(로컬푸드)연구회 회의 개최

의정활동



10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장단 주요현안사항 간담회 개최



10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10월 31일 경제복지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11월 7일 봉덕초등학교 학생들 의회 방문



11월 11일~11월 13일 의정연찬회 실시



11월 20일 창원시 학교(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사진으로 보는



11월 25일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12월 2일 경남은행 지역환원 농성장 방문

의정활동



12월 3일 환경문화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2월 9일 균형발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12월 11일 공직선거법 관련 의정연찬회 개최



12월 17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시·도 대표회의 참석



12월 18일 제1대 창원시의회 의정활동 브리핑 실시

제32회 임시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전)는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배종전 의장은 개회사에서 “연말 정례회를 앞두고 차근차근 올 한해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이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 하나하나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셔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2013~2017),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창원시 진해청소년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25 창원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0월 8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10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10월 11일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한 후, 10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 마산해양드라마세트장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 소속의원 11명은 10. 10일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마산해양드라마세트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참석한 의원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마산해양드라마세트장에서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꾸

준하게 촬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수한 작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마산해양드라마세트장 옆 바다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된 향기나라 산책로를 둘러보며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점검 등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 관내 노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주)는 제3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현장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성산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한 관내 3곳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종사원들과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통해 내실있는 복지관 운영 방안을 모색코자 실시하게 되었다.

한편, 정영주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고객편의 중심의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였다.

●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 의정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환경문화분야 정책제안의 자리 마련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조준택)에서는 10. 14일 창원시의회 환경문화위원회실에서 소속 자문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자문위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환경문화분야 정책제안과 의정발전을 위한 상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날 창신대학교 음악과 김태모 교수, 창원대학교 환경

공학과 박경훈 교수, 창원문성대학 문헌정보과 서희 교수가 참석하여 각자 분야별 정책제안, 지역발전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문화예술활성화와 시민갈등 완화라는 주제를 펼친 창신대 김태모 교수의 제언에 환경문화위원들은 지역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정보교류와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나아가 시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축제에 다양한 자원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의정연수 실시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종천)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 간의 일정으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의정연수(교육)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창원대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를 초빙하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장의 역할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 모인 의장님들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긴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앞으로 “지방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방의회의 위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활발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연찬회를 마치고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 배종천 회장은 “이번 연찬회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 뿐만아니라 시·군간 소통과 화합이라는 대명제 아래 의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창원시의회-창원시 학교(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정책방향 토론회 개최



창원시의회 농촌정책(로컬푸드) 연구회(방종근 대표의원)는 오늘 의회 대회의실에서 『창원시 학교(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토론회는 지난 8월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한 농촌정책(로컬푸드)연구회가 현지견학 5회, 간담회 4회를 거치면서 도농 통합 창원시에 적합한 학교(공공)급식과 로컬푸드가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마련한 것으로, 시의원 및 농업·학교급식·친환경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 개회식은 연구회 대표의원인 방종근 시의원의 개회사와 배종전 의장 및 조영과 창원시 제2부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2부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은 연구회 간사인 노창섭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김종덕 교수가 발제를 맞아 식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하였다.

김종덕 교수는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이며,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한 학교급식은 교육의 중요한 장이 될 수 있으므로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 고 주장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옥선 창원시의회 의원, 하연미 창원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 진현국 학교급식경남연대 대표가 학교 및 공공급식에 대하여, 김동수 창원시의회 의원, 권중호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임두진 대산면 농업인이 로컬푸드를 중심으로한 농업정책의 전환에 대하여 각각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찬회 실시



창원시의회(의장:배종천)는 11월 25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의정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었던 최민수 박사의 “예산 안 심사 역량강화를 통한 예산절감 및 재정건전성 확보, 집행기관을 수준 높게 견제·감시 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 의정 관련 실무 특강과 개그맨 엄용수의 “지도자의 해학과 리더십” 및 이재술 교수의 “2014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기획 및 전략, 다양한 사례를 통한 선거법관련 질의 답변” 교양특강 등이 있었으며, 지역 특성화 사업현장 비교견학 및 체험을 위한 슬로시티 증도 느리게 보기 특별프로그램과 갯벌 생태전시관 시찰 등 알차게 진행되었다.

창원시의회 배종천 의장은 “이번 연찬회가 초대 통합 창원시의회 마지막 연찬회로서 그동안의 모든 갈등을 푸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제2차 정례회를 알차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시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다. 개회식에 앞서 창원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본회의장을 감미롭고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웠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11월 25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고 △12월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가 있으며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이 있고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이 있고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으며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배종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통합창원시 제1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여는 이 시점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성찰해 보고 통합의 명제인 화합과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 ‘원원’하여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갈 것과 의원 상호가 신뢰와 믿음, 배려 속에서 ‘하나된 창원시의회’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창원시의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주요한 회기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되며 시민의 복리향상과 경제활성화 정책에 중점을 둔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실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제33회 정례회기간중인 지난 29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29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황일두)는 금강로 구암방향 연결도로 교통 혼잡민원관련 3.15국립묘지 입구에서 회성동 교도소 일원 방문하여 민원의 소리를 들었으며, 2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상남동 누비자 종합타운건립 예정지, 마산회원구 청사 신축 예정부지, 호계주민운동장 부지 등 5개소를 방문 선정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였고, 3일 환경문화위원회(위원장 조준택)는 진해구 소사동과 두동에 위치한 김달진 문학관과 웅천도 요지전시관을 방문 시설관리와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살펴보았다.

현장에서 의원들은 해당 실과장 및 현장관리자로부터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점검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을 세심하게 지적하고 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창원시의회 예결특위, 창원시 내년 예산 심사 13개 항목 345백만원 삭감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석)는 제33회 정례회 기간중인 지난 5일부터 2일간 예결특위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도 창원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그 결과 13개 항목에서 345백만원을 삭감했다.

삭감내역으로는 ▲노후주택지 공공개발 방안 연구용역 3백만원 ▲택시총량제 연구 용역비 2백만원 ▲진해만 유입하천 오염대책 및 생태하천 조성계획수립 용역 13백만원 ▲평성일반산단 SPC출자 및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5백만원 ▲창원 삼진산단조성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백만원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35백만원 ▲방재형 생태공원 조성 구상 용역 9백만원 ▲ 감계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단지계획 수립용역 90백만원 ▲의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 청산용역 2백만원 ▲동읍·대산면지구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9백만원 ▲성주지구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5백만원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관련 계획수립 용역 150백만원 ▲ 감계시영입대A 준공식관련 시설장비 임차비 2백만원이다.

지방채 상환적립기금 등 총 14개 872억 8,232만 7천원(2014년도말 조성액)의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가결됐다.

창원시의회 공직선거법관련 의정연찬회 개최



창원시의회(의장 배종천)는 11일 제3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후 의원 역량 강화 및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 관련 의정연찬회를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전의원을 대상으로 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지도계장 김지영)에서 ▲공직선거법상 상시금지행위 ▲선거일전 180일·90일 도래 ▲선거기간 중

제한 금지행위 ▲명함, 홍보전단 등 홍보물 제작·배부에 관한 사항 등을 강의하였고 배종천 의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높여 의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조갑련 의원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여성의 정치 참여

2013. 10. 10 창원시보 제79호 게재

정치는 곧 생활이며 생활은 곧 정치이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하는 것만이 정치활동이 아니라, 정책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는 것도 명백한 정치활동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정치관련 뉴스조차 보지 않는 사람들도 정책의 의도대로 행동하는 즉, 정책찬성이라는 끊임없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곧 정치의 역사이다.

스스로를 다스린다는 정치 본래의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 지방자치라고 볼 때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에 보다 충실한 것이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성의원은 복지, 교육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안에 충실한 면을 보여왔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중 15.7%만이 여성의 원이고 광역의원은 14.8% 기초의원은 21.7% 또한 광역자치단체장 0% 기초자치단체장 2.6%라는 통계가 말해주듯이 여성은 너무나 과소대표 되어왔다. 유권자의 50%인 여성에게도 적절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정치인을 발굴 육성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비례대표의 비율을 30%로 늘려서 여성후보 홀수순번 의무공천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될 것이라 제언한다. 두 번째, 지역구의원 의원 여성비율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당공천제와 여성할당제를 병행하여 현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경우 (소선거구제로

전환 시 지역구 30%이상)기초의회에서는 각 선거구별 즉, 2인, 3인, 4인 등 개별 선거구별로 정당은 의무적으로 여성후보 1인 이상을 공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광역의회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 당 여성후보 1인 이상을 공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의회는 선거구제의 크기를 소선거구제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나 광역의회 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영·호남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요정당에서 공천을 하면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러한 지역주의 구도 하에서 중선거구제는 한 정당의 지지 세력을 여성후보를 포함한 2~4인의 후보에게 흩어지게 함으로서 1인 후보를 내는 군소정당과 지역적 소외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여성후보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많은 난관들이 있다. 산업화와 농업사회에 남아있는 고정된 성역할(gender role)관념들과 남성우위의 정치구조와 정치 문화 및 사회, 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 요인(정치자금과 동원력과 같은)과 사회적 자원 및 정치적 역량의 결핍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단순한 선거의 법과 제도만을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는 그 내용면에서 정치적 대표성을 100%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문화적인 다른 부분의 제도들도 선거제도와 함께 여성의 권위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 발전되어 유권자의 50%인 여성에게도 적절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져 진정한 민주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희철 의원

다양한 방법으로 CCTV 대신해야

2013. 10. 25 창원시보 제80호 게재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어느 새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맑고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르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지만 강력범죄가 너무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 시민들은 방법에 대한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불안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지역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방법용 CCTV 설치를 늘려가고 있지만 설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마산 중부경찰서가 추진 중인 제도로 CCTV가 없는 지역 주민들 중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퇴근 후 주차할 때 골목길을 녹화할 수 있는 각도로 주차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범죄 발생 장소 인근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경찰이 범인을 추적하는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구 동부경찰서가 지난 4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크고 작은 범죄를 해결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중이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CCTV 설치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일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초로 폐 휴대폰을 활용해 개발한 스마트 모바일 산불예방시스템인 ‘산불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 CCTV영상 감시시스템보다 기능이 다양하며 무선 통신망을 이용함으로써 설치비용과 통신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또 태양전지판 설치로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도 없고 장소에 관계없이 이동설치가 가능하며 관리비용도 없습니다. 부산시는 국내 저비용 고효율의 특화된 스마트 안전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된 CCTV들이 노후화돼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교체된 CCTV를 특정지역(놀이터, 공터, 등산로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면 CCTV의 존재만으로도 범죄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도 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CCTV를 대신하거나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 원 시 의 회

<http://council.changwon.go.kr>